

제 72차 이사회 회의록

1. 회의 개요

- 1) 통 지 일 : 2026. 01. 28. (수)
- 2) 회의 개최 : 2026. 02. 13. (금) 오후 12:00 -13:00
- 3) 회의 장소 : 하나로 참숯갈비
- 4) 참석 임원 : 배운규대표, 신애란이사, 조길환이사, 지미자이사, 이은성이사, 박종우이사,
- 5) 전차회의록 처리
- 6) 감사 보고 : 2025년 전남밀알복지재단 사업 및 결산 감사보고
- 7) 부의안건 심의 :
 - 가. 제1호안 : 전남밀알복지재단 산하시설 2025년 사업 및 예산 결산(안)
 - 나. 제2호안 : 전남밀알복지재단 제규정 변경(안)
 - 다. 제3호안 : 전남 최종증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24h-3h) 운영규정(안)
 - 라. 제4호안 : 전남밀알복지재단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운영
 - 마. 제5호안 : 전남밀알복지재단 노인복지사업 운영
- 8) 기타사항
- 9) 폐회 선언

2. 회의 내용

사회 : 황형철 사무국장

▣ 성원 보고

재직이사 7명, 참석 이사 6명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며, 감사 1명 참석하셨음을 보고하다.

▣ 개회 선언

재직이사 7명, 참석 이사 6명과 감사 1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 하니, 배운규 대표이사가 개회를 선언하다.

▣ 인사 말씀

배운규 대표이사가 인사말씀을 하다.

■ 전차회의록 처리

황형철 사무국장은 제71차 이사회가 2025년 12월 9일에 개최되었으며, 당시 상정된 안건들이 회의자료에 근거하여 심의·의결된 바 있음을 보고하다. 또한 전차회의록은 관련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 사전에 이사들에게 배부되었음을 설명하다.

배운규 대표이사는 전차회의록 내용과 관련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이사들에게 질의하다.

조길환 이사는 배부된 제71차 이사회 회의록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결과, 회의 진행 및 의결 사항이 사실과 동일하게 정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다.

박종우 이사와 이은성 이사는 조길환 이사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다.

배운규 대표이사는 동의와 제청이 있었으므로 제71차 이사회 회의록 승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추가 의견을 확인한 바, 더 이상의 이의나 수정 요구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71차 이사회 회의록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 감사보고

○ 전남밀알복지재단 2025년 감사보고

정민화 감사는 2025년도 사회복지법인 전남밀알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다.

감사보고를 통해 2025년도 회계연도 동안 법인 및 산하시설의 재무·회계 처리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또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고하다.

또한 각종 사업 운영이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며, 관련 증빙서류와 회계장부 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함을 확인하였음을 설명하다.

다만, 일부 문서관리 및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경미한 보완 필요 사항이 발견되어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관리의 보완과 지속적인 내부 점검이 필요함을 부연 설명하다.

배운규 대표이사는 감사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이사들에게 질의사항이 있는지 묻다.

신애란 이사는 감사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인의 재정 운영이 매우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감사의 세심한 점검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다. 또한 보고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감사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할 것을 동의하다.

박종우 이사는 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운영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였으나, 지적된 경미한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 대상 교육 강화와 내부 관리체계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청하다.

배윤규 대표이사는 동의와 제청이 있었으므로 감사보고 접수 안전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확인한 바, 추가 질의 및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5년도 감사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선언한다.

▣ 부의안건 심의

가. 제 1호안 : 전남밀알복지재단 산하시설 2025년 사업 및 예산 결산(안)

배윤규 대표이사는 제1호 안건 “전남밀알복지재단 산하시설 2025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황형철 사무국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작성된 2025년도 전남밀알복지재단 및 산하시설의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며, 별지 1 자료를 참조하여 각 시설별 세부 결산내역과 예산 대비 증감 사유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보고하다.

(단위 : 천원)

기관별	세입 예산	세입 결산	증감(-)	세출 예산	세출 결산	증감(-)	이월금
총계	21,418,472	21,111,647	-306,825	21,418,472	18,552,381	-1,825,149	2,559,266
법인사무국	853,386	846,358	-7,028	853,386	427,969	-425,417	418,389
법인사무국 -일상돌봄사업	43,416	25,618	-17,798	43,416	21,509	-21,907	4,108
에덴동산	1,167,404	1,169,658	2,254	1,167,404	1,089,569	-77,835	80,089
밀알장애인 활동지원센터	3,470,604	3,535,968	65,364	3,470,604	3,221,559	-249,045	314,409
밀알사랑 노인요양원	2,377,216	2,354,310	-22,906	2,377,216	2,187,611	-189,605	166,699
밀알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400,680	409,856	9,176	400,680	383,675	-17,005	26,181
민음의 집	111,603	111,614	11	111,603	87,657	-23,946	23,957
사랑의 집	112,242	108,169	-4,073	112,242	87,562	-24,680	20,607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3호	983,319	989,301	5,982	983,319	462,848	520,471	526,453
피해장애인쉼터 -행복한 집	213,962	213,417	-545	213,962	207,922	-6,040	5,495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2,959,882	2,923,794	-36,088	2,959,882	2,802,937	-156,945	120,857
보성군관 -활동지원사업	4,591,425	4,302,436	-288,989	4,591,425	3,640,710	-950,715	661,727
보성군 장애인생활관	1,482,731	1,476,307	-6,424	1,482,731	1,435,382	-47,349	40,925

보성군장애인 직업재활센터	807,758	802,605	-5,153	807,758	714,581	-93,177	88,024
영암군장애인 종합복지관	1,551,690	1,551,082	-608	1,551,690	1,527,359	-24,331	23,723
영암군-통합돌봄	291,154	291,154	0	291,154	253,531	-37,623	37,623

사무국장은 “각 시설별 결산은 관계 법령과 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세입·세출 증감 사유는 이용인원 변동, 보조금 집행률, 사업추진 일정 조정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고하다.

이에 대해 **배윤규 대표이사**는 “별첨 자료를 통해 결산 내용이 충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며 추가 보완 설명을 진행한 후, 이사들에게 의문사항이 있는지 질의하다.

조길환 이사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감사님들의 세심한 감사 과정을 거쳐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고 말하고, 본 안건에 동의 의사를 표명하다.

신애란 이사는 “전남밀알복지재단의 사업 및 회계 결산을 검토한 결과, 법인과 산하시설의 사업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사업이 성장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재정관리와 체계적인 회계운영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본 안건에 제청하다.

배윤규 대표이사는 안건에 대한 가부를 묻다.

이에 **지미자 이사, 이은성 이사, 박종우 이사**는 일제히 동의 의사를 표명하다.

의장은 “동의와 제청이 있으며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제1호 안건은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나. 제 2호안 전남밀알복지재단 제규정 변경(안)

배윤규 대표이사 제2호 안건 “전남밀알복지재단 제규정 변경(안)”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황형철 사무국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하다.

“전라남도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인사무국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법인 운영 과정에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경조사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장 법인사무국 조직 및 운영 규정 신설
- 제4장 시설관리 및 운영규정 제2절 사무행정 및 지도점검에

제39조(유관관계기관 및 법인 산하시설 종사자 경조사비 지원 규정) 신설

이어 사무국장은 “본 규정 신설을 통해 법인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경조사비 지급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법인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부연 설명하다.

배윤규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법인사무국 운영 및 경조사비 지급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명문화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금번 규정 신설은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하다.

박종우 이사는 “규정 신설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다만 경조사비 지급 등 재정 지출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예산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 안건에 동의 의사를 표명하다.

지미자 이사는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모든 단체는 아무리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고 비용을 집행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경우 향후 행정적·법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규정 신설은 매우 적절한 조치이며, 법인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 판단된다”고 말하며 적극 동의하다.

신애라 이사, 이은성 이사, 조길환 이사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청 의사를 표명하다.

이에 배윤규 대표이사는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와 제청이 있으므로, 전남밀알복지재단 제 규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다. 제 3호안 전남 최종증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24h-3h) 운영규정(안)

배윤규 대표이사 제3호 안건 “전남 최종증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24h-3h) 운영규정(안)”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황형철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 및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최종증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라 제공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본 운영규정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운영규정, 인사관리 규정, 복무관리 규정, 급여 규정, 여비 규정, 퇴직금 규정 등 총 6개의 세부 규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함을 첨부자료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배윤규 대표이사는 시설 운영에 있어 운영규정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며, 본 제정안은 「최종증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지침」과 사회복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규를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된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규정 제정을 통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은성 이사는 본 제정안이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안건에 동의하였다.

지미자, 신애란, 조길환, 박종우 이사 또한 본 운영규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에 제청하였다.

배윤규 대표이사는 「전남 최종증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은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제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라. 제 4호안 전남밀알복지재단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운영

배윤규 대표이사 제4호 안건 “전남밀알복지재단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운영”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황형철 사무국장은 전남밀알복지재단이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고용지원을 위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자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추진하고자 함을 설명하였다.

1. 제안사유

전남밀알복지재단이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고용지원을 위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업안정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추진하고자 함.

- 가. 장애인 및 노인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 나. 지역사회 내 구직자와 구인처 간 원활한 취업 알선 체계 구축
- 다. 법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및 공익적 고용지원 기능 강화
- 라.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사업의 전문성과 공신력 확보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무료직업소개사업

나.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전남밀알복지재단

다. 사업내용

- 구직자 상담 및 직업정보 제공

- 구인·구직자 간 취업 알선

- 취업 후 사후관리 및 고용유지 지원

라. 대상자 : 장애인 및 취약계층 구직 희망자

마. 운영형태 : 비영리 무료직업소개사업

바. 사업수행기관 : 법인 및 산하시설 중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이사회 승인 기관
(전남밀알복지재단 법인사무국, 보성군장애인복지관,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

3. 관련법규

가.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7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등)

4. 추진계획

가.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 작성 및 관할 행정기관 제출

나.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체계 구축

다. 사업운영 규정 및 업무 매뉴얼 정비

라. 신고 수리 후 본격 사업 시행

5. 소요예산

본 사업은 법인 기존 인력 및 운영체계를 활용하여 추진하며, 별도의 추가 예산 편성 없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배윤규 대표이사는 무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을 통해 법인 내 장애인 및 노인시설 등의 원활한 인

력 충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언하였다.

신애란 이사는 본 사업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 평가하며, 현재 다수의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본 안건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미자 이사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본 안건을 제청하였다.

조길환, 박종우, 이은성 이사 역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및 운영에 대하여 모두 찬성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배윤규 대표이사는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4호 의안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및 운영에 관한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마. 제 5호안 전남밀알복지재단 노인복지사업 운영

배윤규 대표이사 제5호 안건 “전남밀알복지재단 노인복지사업 운영”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황형철 사무국장은 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지역사회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전남밀알복지재단의 사회복지 실천 영역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돌봄 관련 3대 사업을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1. 제안사유

- 안 건 명: 노인 주·야간·단기보호사업, 재가복지사업, 요양보호사 교육사업의 법인 목적사업 추가 및 추진(안)
- 상정 목적
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지역사회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전남밀알복지재단의 사회복지 실천 영역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돌봄 관련 3대 사업을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자 본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함.

2. 주요내용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1)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돌봄 수요 증가
 - 전라남도내 전국 평균 대비 고령화율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재가노인 및 돌봄취약 노인에 대한 공공·민간 차원의 돌봄서비스 확대가 시급한 상황임.
-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기조 부합
 -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따라 시설중심 돌봄에서 재가·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3) 법인의 사회복지 전문성 및 운영역량 활용

- 전남밀알복지재단은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과 조직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노인돌봄 영역에서도 안정적 사업 수행이 가능함.

4) 돌봄인력 부족에 대한 구조적 대응 필요

- 요양보호사 인력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양성-배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함.

나.. 목적사업 추가(안)

1) 목적사업 추가 내용(정관 반영 사항)

전남밀알복지재단 정관 제 1장 제4조(사업의 종류) 제 1항에 다음 각 호를 추가함.

- 노인 주·야간·단기보호사업 운영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제공 사업
- 요양보호사 교육 및 돌봄인력 양성사업

다. 사업별 주요 내용

1). 노인 주·야간·단기보호사업

• 사업목적: 재가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유지 및 가족 돌봄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 정서·여가·사회적응 프로그램
- 급식·송영·건강관리 서비스

• 기대효과: 노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생활 유지 및 시설입소 예방

2). 재가복지사업

• 사업목적: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정주환경 강화

• 주요내용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 정서지원 및 사례관리 연계

• 기대효과: 맞춤형 돌봄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3). 요양보호사 교육사업

• 사업목적: 전문 요양보호사 양성을 통한 돌봄서비스 질 제고

• 주요내용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교육과정 운영
-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과정 운영

• 기대효과: 지역 돌봄인력 수급 안정화 및 법인 산하시설 인력 확보

배윤규 대표이사는 고령사회 대응은 법인의 장기적 발전 전략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본 안건은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적 사업 확장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요양보호사 교육사업을 통해 법인 산하시설의 인력 수급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언하였다.

박종우 이사는 전라남도의 고령화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 확장이라고 평가하

며, 법인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5호안에 적극 동의하였다.

신애란 이사는 재가복지 중심의 돌봄 확대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며,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전환에 법인이 적극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발언하며 제청하였다.

이은성 이사는 요양보호사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사업 병행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법인의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조길환 이사는 정관 목적사업 추가는 법인의 중장기 발전에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관련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찬성하였다.

이에 배윤규 대표이사 이상의 논의를 거쳐 「노인 주·야간·단기보호사업, 재가복지사업, 요양보호사 교육사업의 법인 목적사업 추가 및 추진(안)」은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정관변경은 차후 사업을 할 때 진행할 것을 말하다.

▣ 폐회선언

신애란 이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 없다면 폐회할 것을 건의하다.

지미자 이사는 이에 동의하다.

이은성 이사, 박종우 이사, 조길환 이사는 각각 제청하다.

배윤규 대표이사는 동의와 제청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금일 상정된 모든 안건의 심의를 마쳤음을 알리며 13시 2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6. 02. 13. (금)

기록 : 황 형 철 사무국장

배 윤 규		신 애 란	
조 길 환		지 미 자	
박 종 우		이 은 성	